등록번호
안내서-1148-01

청렴韓세상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2021.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안내서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1년 9월 16일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043-719-2211(식품등), 2215(식품등), 2231(수산물), 2221(축산물)
팩스번호 : 043-719-2200

CONTENTS



01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검사란? _ 06
2 수입식품등 검사절차 및 방법 _ 07
3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_ 08
4 검사명령제 _ 09
5 우수수입업소란? _ 10
6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_ 11

02 수입신고서 작성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_ 14
2 UNI-PASS를 통한 신고서 작성 _ 15
3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_ 28

03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1 공통사항 _ 34
2 농산물 신고요령 _ 38
3 수산물 신고요령 _ 40
4 축산물 신고요령 _ 41
5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신고요령 _ 42
6 기구 및 용기·포장 신고요령 _ 44

04 수입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1 수입신고 및 검사 _ 46
2 구비서류 _ 54
3 축산물 분야 _ 58
4 수산물 분야 _ 60
5 표시사항 _ 66

[부록1] 영업자 준수사항 _ 70
[부록2] 수입식품 검사부서 및 관할구역 _ 75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01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

0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검사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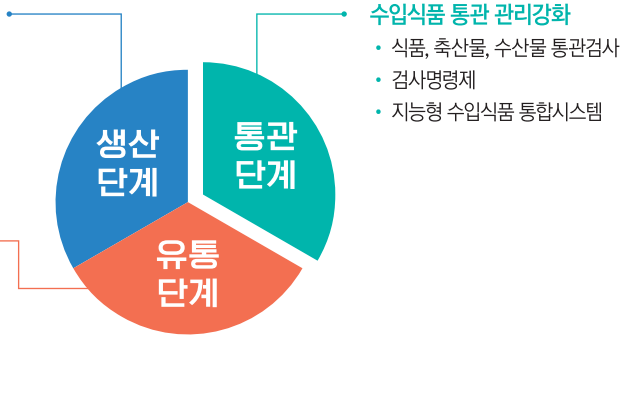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국내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❶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❷ **통관(수입)단계 검사(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현장검사, 서류검사)** ❸ **유통단계 수거·검사**로 3중 안전관리 체계로 관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매 수입시 마다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02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및 방법

1 수입식품등 검사 절차



2 수입식품등 검사종류 및 방법

검사종류	처리기한	검사방법
서류검사	2일 (축산물 : 3일)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3일 (축산물 : 5일)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정밀검사	10일 (축산물 : 18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무작위 표본검사	5일 (축산물 : 18일)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

03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라 최초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며, 이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이 동일한 수입식품이 재수입되는 경우 서류검사(또는 현장검사) 대상에 해당

* 단, 무작위표본검사에 선정될 수 있으며, 기준 및 규격이 신설·강화되거나 해외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

1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구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조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농·임·수산물 제외)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다만, 주류(「주세법」 제5조에 따른 주류를 말한다)의 제품명은 제품명에 포함된 제조연도, 숙성연도 또는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경우에도 같은 제품명으로 봄)
농·임·수산물	**생산국·품명·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가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조국·해외제조업소·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건강기능식품	**제조국·해외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주원료의 배합비율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축산물	• **식육·원유·식용란** :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그 외의 축산물** :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서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

* 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04 검사명령제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 검사명령대상 수입식품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지정 현황

순번	대상식품	국가	검사항목	검사기간
1	천연향신료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금속성이물	~'22.2.28.
2	드럼스틱 함유(50%) 분말제품	중국, 인도, 스리랑카	금속성이물	~'22.8.29.
3	향미유	중국	벤젠	~'22.6.24.
4	베리류(블루베리, 링곤베리, 빌베리)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잼류, 과채가공품	폴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방사능	~'22.10.21.
5	노니 함유(50%) 분말제품	베트남, 인도네시아	금속성이물	~'21.12.23.
6	능이버섯	러시아	방사능	~'22.4.22.
7	쿨란트로	태국, 베트남	농약 8종	~'22.8.29.
8	보리순 함유(50%) 과채가공품 및 고형차	모든 국가	금속성이물	~'21.11.24.
9	구기자	중국	농약 6종	~'22.4.22.
10	바질	태국	농약 3종	~'22.6.24.
11	크릴어유(1개 제조업소)	미국	에톡시퀸 및 잔류용매 5종	~'22.8.31.
12	천연향신료 분말제품	중국	금속성이물	~'22.10.21.
13	생식용 참다랑어	일본(수출국)	살모넬라	~'22.3.30.
14	김치(5개 제조업소)	중국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21.11.30.
15	과자(밀봉제품, 7개 제조업소)	인도	세균수	~'22.10.21.

* 자세한 현황은 식약처 누리집(https://www.mfds.go.kr) → 알림 → 공지 참조

05 우수수입업소란?

현지 해외제조업소에서부터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상태를 점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를 등록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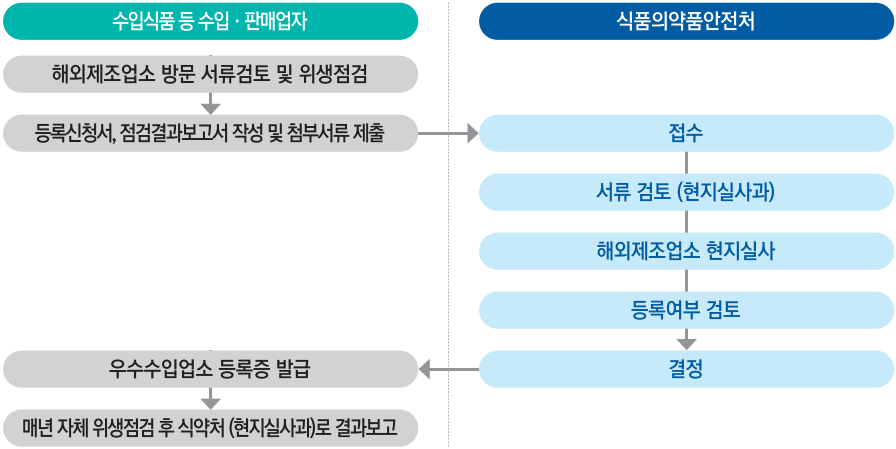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1 우수수입업소 우대조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제외
- 우수수입업소 등록인의 명칭, 등록 제품 등 누리집 공개
- 우수수입업소 도안 표시

2 신청 절차



06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우수수입업소의 제품에 대하여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 매년 12월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를 받고 있으며, 계획수입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 신고 즉시 확인증 발급
  * 단, 위해정보 등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입신고건과 동일한 절차로 처리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현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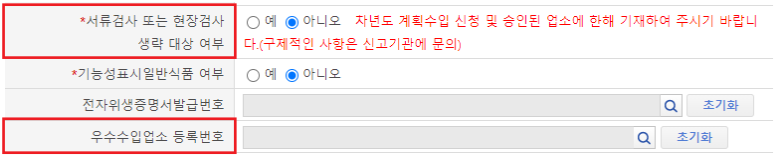
* 관련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1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매년 12월) ▶ 접수 (관할 지방청) ▶ 검토 (최근 3년 수입건수, 부적합 여부 등) ▶ 결재 ▶ 확인서 발급

2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계획수입 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를 '예'로 신고하여야 하며,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를 신고하여야 함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02
수입신고서 작성

알기쉬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안내서

0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를 통해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 https://unipass.customs.go.kr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6. 30.>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4쪽 중 제1쪽)

신고시기	A: 본신고 [ ] B: 사전신고 [ ]	접수번호		접수일자	년 월 일
신고제품구분	1: 농·임산물 [ ] 2. 수산물 [ ] 3. 축산물 [ ] 4: 가공식품 [ ] 5: 식품첨가물 [ ] 6: 기구 또는 용기·포장 [ ] 7: 건강기능식품[ ]	처리기간	식품등·건강기능식품: 서류검사 2일, 현장검사 3일, 무작위표본검사 5일, 정밀검사 10일 (전군수시험대상 10일, 식품조사처리식품 14일, 가온보존시험대상 15일) 축산물: 서류검사 3일, 현장검사 5일, 무작위표본검사·정밀검사 18일		

수입신고인 (수입화주)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제조 가공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업종		허가(등록·신고)번호
	주소		
수입신고 대행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상호		등록번호
	주소		

제품명		한글명		유형 또는 품목	
총수량	(단위:)	순중량	kg	과세가격	(단위:US$)
총향수	향번	화물관리번호		선하증권(B/L)번호	
세번부호 (HK 번호)		용도		성분·재질 및 제조공정: 제2쪽에 기재	
유통기한	년 월 일(제조일)부터	년 월 일까지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축산물:해외작업장 (포장처리·가공장)]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도축장 [축산물만 해당]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출업소				회사명	
	주소				
포장장소	등록번호			주소	
선적일	년 월 일			선적항	
입항일	년 월 일			선명(기명)	국내도착항
검사(반입)장소	보관업 등록번호			상호	(☎ - -)
				성명	
				주소	
반입일	년 월 일				
검사기관					
이력번호(수입쇠고기 및 수입 돼지고기만 해당함)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표시함[ ], 표시하지 않음[ ], 해당 없음[ ]				
유기식품등 여부	예[ ], 아니오[ ]				
영유아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에의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식품조사처리 여부	완제품 조사[ ], 원료조사[ ], 해당 없음[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고염친화식품 여부	영양성분 조절 식품[ ] 경도조절제품[ ] 점도조절 제품[ ] 해당없음[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여부	예[ ], 아니오[ ]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예[ ], 아니오[ ]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02 UNI-PASS를 통한 신고서 작성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공통 사항 ▶ 품목 사항 ▶ 복합 구성 제품 ▶ 제조 가공 공정 ▶ 성분 재질 ▶ 도축 가공장 ▶ 식육 종류 부위 ▶ 첨부 파일

UNI-PASS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품목·원재료·해외제조업소 등이 조회되지 않거나, 신고서 작성 후 오류통보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식품 시스템 상담센터(☎1811-6496)**으로 문의바랍니다.

1 기본사항


기본사항

*신고구분 본신고 *신고제품구분 농·임산물

*신고기관 -- 선택 --

신청번호 채번 이전에 신고제품구분을 변경하면 입력하신 모든 정보가 초기화 됩니다.
신청번호 채번시에는 신고제품구분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영업 등록 후 인허가 정보(수입화주, 제조/가공업자, 수입신고 대행업자)가 조회되지 않거나,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록 이후에도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811-6496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 등록은 소재지 관할 지방청,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수출업소, 포장장소) 등록은 현지 실사과(043-719-6206) 문의
영업정보(수입화주, 제조/가공업자, 수입신고 대행업자) 및 해외제조업소(해외작업장, 수출업소, 포장장소)의 정보(상호, 주소, 대표자명 등)가 식약처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고할 수 없으며,
오류통보 발생 시 해당 정보를 다시 조회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와 협의한 서식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증명서 서식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축산물 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mfds.go.kr/brd/m_563/list.do)

신고제품구분에 따른 입력항목(탭)제어

- 농·임산물 : 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파일 입력가능
- 수산물 : 공통사항, 품목사항, 첨부파일 입력가능
- 축산물 : 공통사항, 품목사항, 제조/가공공정, 성분/재질, 도축/가공장, 식육종류/부위, 첨부파일 입력가능
(제품유형에 따라 탭의 입력항목(가능여부)가 달라짐)
- 가공식품 : 공통사항, 품목사항, 제조/가공공정, 성분/재질, 첨부파일 입력가능
- 식품첨가물 : 공통사항, 품목사항, 제조/가공공정, 성분/재질, 첨부파일 입력가능
- 기구 또는 용기·포장 : 공통사항, 품목사항, 성분/재질, 첨부파일 입력가능
- 건강기능식품 : 공통사항, 품목사항, 제조/가공공정, 성분/재질, 첨부파일 입력가능

신고내용

- **신고구분** : 본신고(보세장치장 반입 후 신고), 사전신고(도착예정일 5일전 신고)
- **신고제품구분** :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신고기관** :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검사기관(부록 참조)

2 신청인



신고내용

- 수입신고인(수입화주) 또는 수입신고대행업체에서 실제 신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연락처, 이메일을 통해 검사진행상황 통보)

3 수입신고대행업체 및 수입신고인(수입화주)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등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신고인 및 수입신고대행업체 입력

4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포장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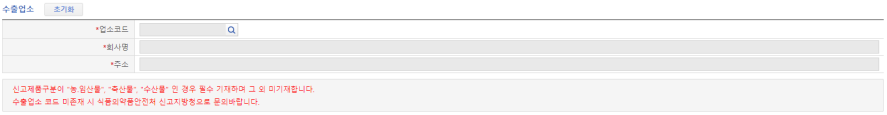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해외작업장)를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가
  - 해외제조업소(포장장소) 등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절차는 '알기 쉬운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참조

- **신고대상**
  - **해외제조업소** : 수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 **해외작업장** : 축산물
  - **포장장소** : 농·임산물

5 수출업소



신고내용

- **식약처에 등록된 수출업소 신고**
  -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에서 신청 후, 관할 지방청(또는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

- **신고대상**
  - 농·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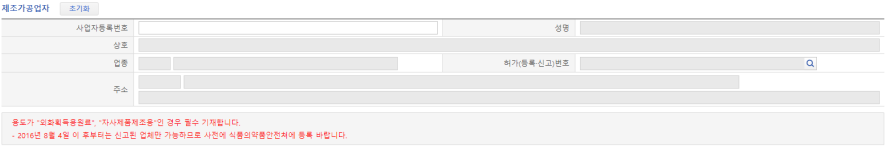
6 검사(반입)장소



☑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등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식품등 보관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보관창고 입력
  - 보관창고 코드 가운데 두 자리가 '06, 07, 10, 11, 13, 70, 88'인 경우 수입식품등 보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신고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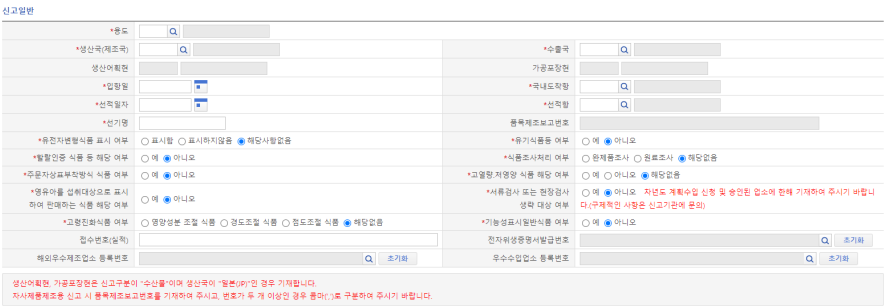
7 제조가공업자



☑ 신고내용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 신고
  -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의 용도가 '외화획득용 원료', '자사제품 제조용'인 경우 필수 입력

8 신고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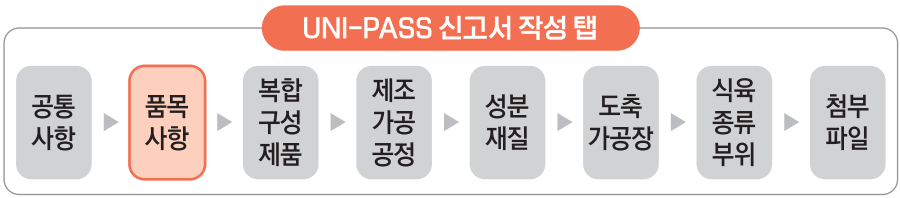

신고일반

*용도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생산어획현		가공포장현	
*입항일		*국내도착항	
*선적일자		*선적항	
*선기명		품목제조보고번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여부	○ 표시함 ○ 표시하지않음 ◉ 해당사항없음	*유기식품등 여부	○ 예 ◉ 아니오
*할랄인증 식품 등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식품조사처리 여부	○ 완제품조사 ○ 원료조사 ◉ 해당없음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식품 여부	○ 예 ◉ 아니오	*고열량,저영양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해당 여부	○ 예 ◉ 아니오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 예 ◉ 아니오.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 및 승인된 업소에 한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항은 신고기관에 문의)
*고령친화식품 여부	○ 영양성분 조절 식품 ○ 경도조절 식품 ○ 점도조절 식품 ◉ 해당없음	*기능성표시일반식품 여부	○ 예 ◉ 아니오
접수번호(실적)		전자위생증명서발급번호	초기화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번호	초기화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초기화

생산어획현, 가공포장현은 신고구분이 "수산물"이며 생산국이 "일본(JP)"인 경우 기재합니다.
자사제품제조용 신고 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고,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콤마(,)로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

- 용도, 생산국, 수출국 등 신고하는 수입식품에 대한 해당사항 신고
  - **가공포장현, 생산어획현** : 신고제품구분이 '수산물'이면서 생산국이 '일본'인 경우 필수 입력
  -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여부, 식품조사처리 여부, 기능성표시일반식품 여부 등 신고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로 정확하게 신고 요망
  -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생략 대상 여부** : 계획수입 신속통관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 **품목제조보고번호** : 자사제품 제조용 등 품목제조보고서 제출대상의 경우 품목제조보고번호 입력
  - **접수번호(실적)**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 신고시 최초정밀검사 건의 접수번호 입력
  - **전자위생증명서 발급번호** : 호주산 식육의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번호를 입력할 수 있으며, 입력한 경우 종이서류 대체 가능



1 신고품목공통정보



신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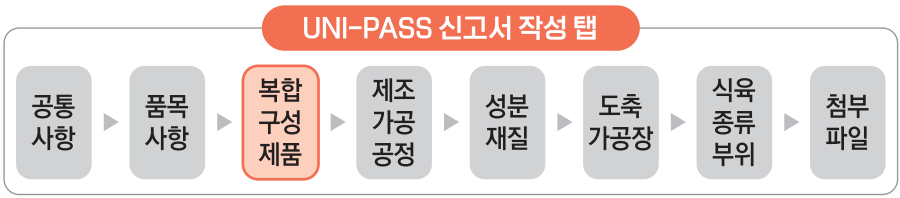
- **제품유형**
  -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신고
  - **농·임·축·수산물 및 식품첨가물** : 신고하는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명 검색 후 신고
  - **건강기능식품** :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가 하나인 경우 해당하는 명칭 검색 후 신고. 단, 둘 이상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복합영양소제품', '복합기능성제품', '영양소, 기능성복합제품' 중 해당하는 품목 신고
- **대표이력번호** : 축산물 중 '소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필수 입력
- **세번부호** : 제품유형 선택시 대표적인 세번부호가 자동으로 입력되나 신고하는 제품과 다른 경우 변경하여 신고
- **한글표시사항** : 신고하는 수입식품에 표시된 한글표시사항과 동일하게 신고

2 품목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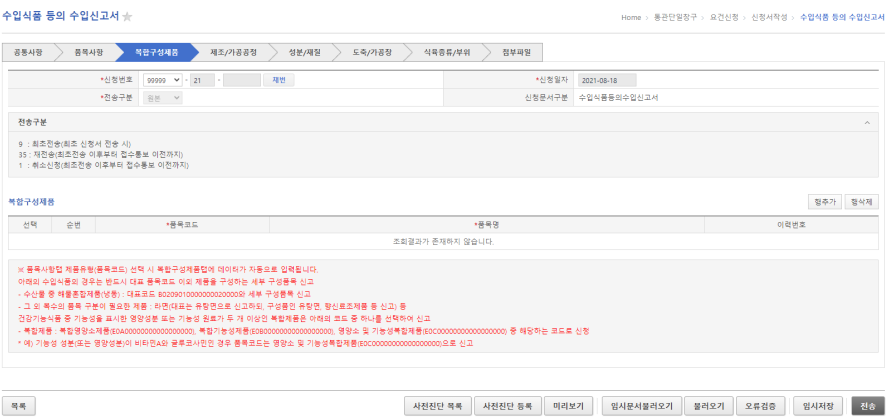


신고내용

- 제품명, 한글명, 수량, 순중량 등 신고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



1 복합구성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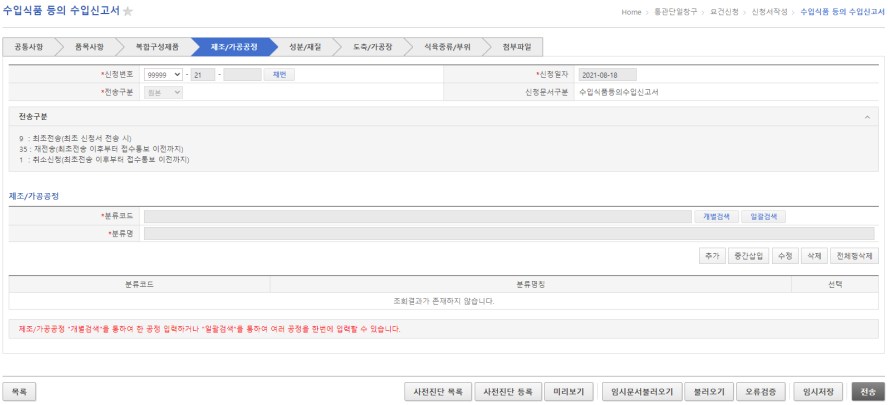
신고내용

- 신고하는 제품이 둘 이상의 품목으로 구성된 제품의 경우 신고(하나의 품목으로 구성된 제품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음)
  - 예1) 해물혼합(수산물)의 경우 구성하는 수산물(새우, 조갯살 등) 신고
  - 예2) 라면의 경우 구성하는 유탕면, 소스, 향신료 조제품 등 신고('품목사항'에 유탕면 입력시 유탕면 외의 나머지 구성품목 입력)
  - 예3) 비타민 A, C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사항'에 '복합영양소제품'을 입력하고, 구성하는 '비타민 A', '비타민 C' 입력
- '품목사항'에 입력한 품목은 '복합구성제품'에 자동으로 입력되며 '행추가'를 통해 추가 품목 입력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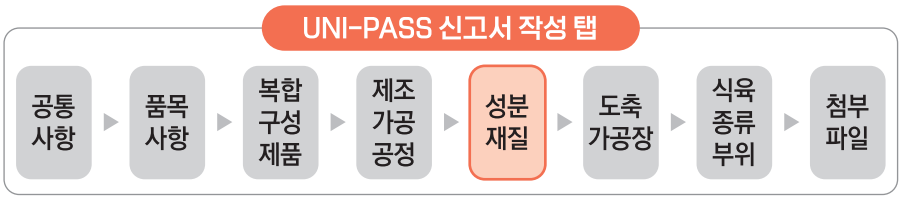
공통 사항 ▶ 품목 사항 ▶ 복합 구성 제품 ▶ **제조 가공 공정** ▶ 성분 재질 ▶ 도축 가공장 ▶ 식육 종류 부위 ▶ 첨부 파일

1 제조/가공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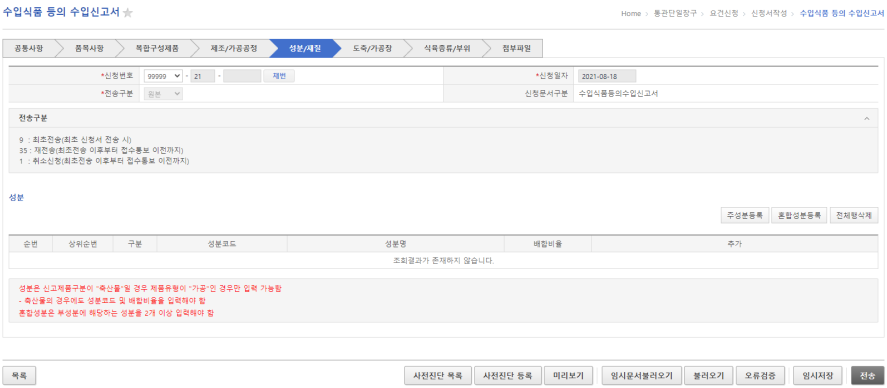


신고내용

- 신고하는 제품에 대한 제조/가공공정 신고
  -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제조공정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



1 성분/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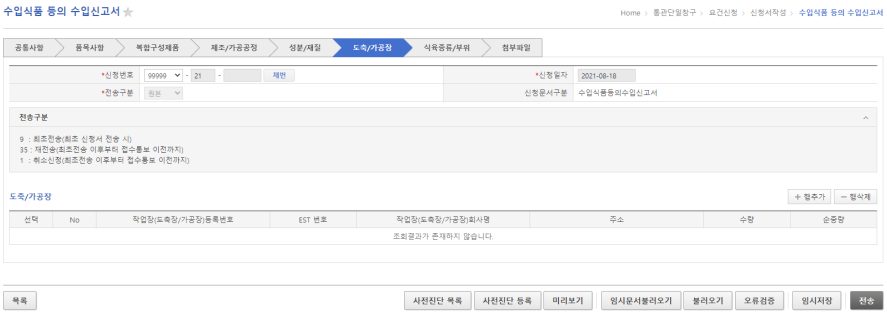
신고내용

- 신고하는 제품에 대한 원재료 및 재질 신고
  -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원료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신고
- 원재료 코드의 경우 단일 원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 이상의 원료가 혼합된 원재료의 경우 '혼합성분등록'을 선택하여 입력
  - 혼합성분의 경우 별도의 코드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며, '혼합성분등록' 입력 시 명칭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단, 반드시 두 개 이상의 원재료가 부성분으로 입력되어야 함)
- 신고하고자 하는 원재료 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입식품정보마루'를 통해서 원재료 코드 신청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규격 및 원료검색 → 성분코드 조회 → '성분신청' 클릭
  - 신규 원재료 신청 전 등록여부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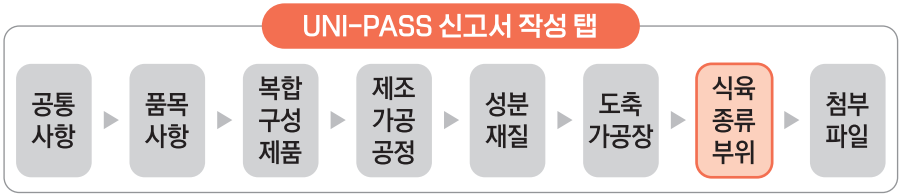
공통 사항 ▶ 품목 사항 ▶ 복합 구성 제품 ▶ 제조 가공 공정 ▶ 성분 재질 ▶ 도축 가공장 ▶ 식육 종류 부위 ▶ 첨부 파일

1 도축/가공장(축산물에 한함)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도축, 가공장)을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가



1 식육종류/부위(축산물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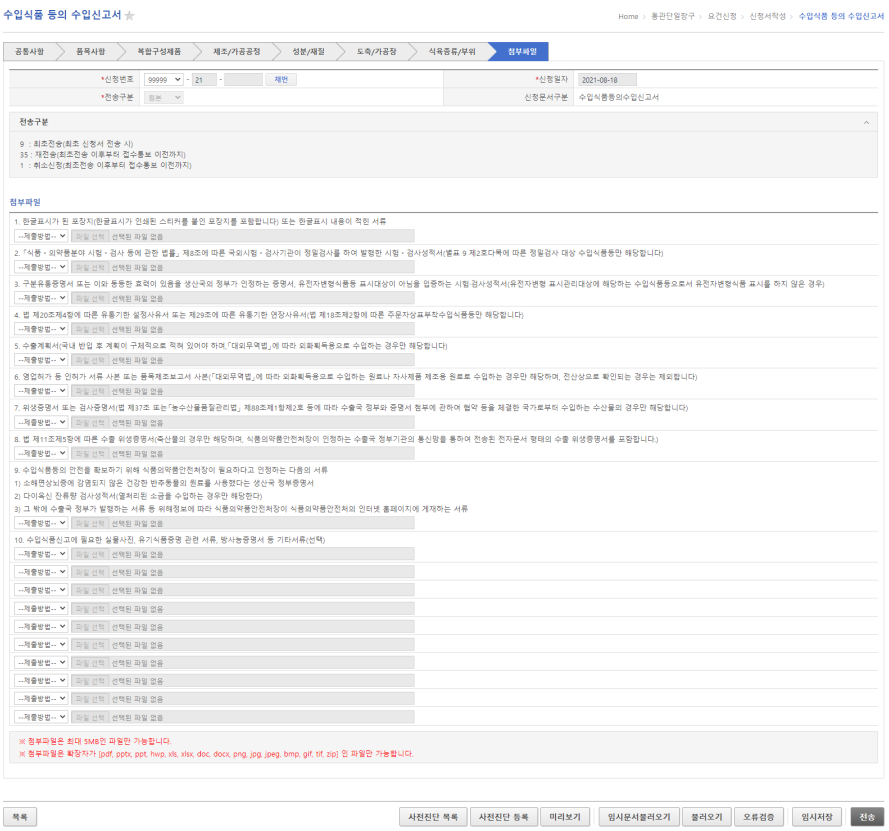
신고내용

- 신고하는 축산물(식육)에 대한 부위명 및 부위별 수량, 중량 신고

UNI-PASS 신고서 작성 탭

공통 사항 ▶ 품목 사항 ▶ 복합 구성 제품 ▶ 제조 가공 공정 ▶ 성분 재질 ▶ 도축 가공장 ▶ 식육 종류 부위 ▶ 첨부 파일

1 첨부파일



신고내용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시 구비서류를 각 항목에 맞게 첨부

03 수입신고시 구비서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 제20조 및 21조에 따른 수입신고시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함께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구분	관련 규정	구비서류
제출 서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①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② 국외시험검사기관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중 「수입식품법」 제21조제3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③ 구분유통증명서, 정부 증명서, 시험검사성적서(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식품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④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 ⑤ 수출계획서(외화획득용 수입식품등) ⑥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외화획득용 및 자사제품 제조용, 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⑦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관련 법령에 따른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수산물) ⑧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 ⑨ 소해면상뇌증 관련 정부 증명서, 다이옥신 잔류 검사성적서 및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수입식품 관련 행정규칙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등)	① 반송품 : 반송사유서, 수출상대국 부적합 사유서, 품목제조보고서(전산상 확인되는 경우 제외), 수출처리계획서 ② 외화획득용 : 수출처리계획서 ③ 연구조사용 : 연구조사계획서
보관 서류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8] 2. 터.	식약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하며,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유통기한 종료일까지 보관)

* 위 목록은 관련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누리집을 통해 게재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다음의 내용은 요약된 내용이므로 상세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

수입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연번	대상국가	대상제품	제출서류	증명내용
1	모든 국가	죽염, 구운소금 등 태움·용융소금 및 이를 함유한 가공소금	검사성적서	다이옥신 잔류량 기준 적합
2	모든 국가 (BSE 발생국[1] 제외)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등	정부 증명서	BSE 발생국 원료 미사용 또는 BSE 미감염 원료 사용
3	BSE 발생국	콜라겐케이싱	정부 증명서	BSE 미감염 원료 사용
4	모든 국가	복어 원료 가공식품	정부 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검사성적서	복어독, 복어유전자 검사결과
5	중국	천일염	허가증	식염 염전 허가증
			제조사 증명서	요오드 미첨가
6	뉴질랜드	꿀 또는 소밀	정부 증명서	뉴질랜드 법령에 적합하게 생산
7	일본[2]	일본에서 제조된 식품등	정부 증명서	생산지 증명 및 요오드, 세슘 검사성적서
8	BSE 발생국	우지가공품 (해당 원료로 제조한 식품등 포함)	정부 증명서	원료 우지의 불용성 불순물 함량 0.15% 이하
		우피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 (해당원료로 제조한 식품등 포함)	정부 증명서	①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음 ② 한국 규정에 따라 특정위험물질과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제조 ③ 세척, pH조정, 헹구기 등 공정을 거쳐 생산
		제2인산칼슘	정부 증명서	단백질, 지방 미함유
9	모든 국가	대마씨 원료 식품등	검사성적서	원료로 사용된 대마씨가 국내기준에 적합
10	베트남	조미쥐치포	정부 증명서	수입이 허용된 해외제조업소이며, 위생적으로 제조되었음

연번	대상국가	대상제품	제출서류	증명내용
11	모든 국가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등	제조사 증명서	젤라틴의 원료유래 물질
12	모든 국가	파피 씨드 제품	검사성적서	모르핀 미검출
13	중국	다진마늘	정부 증명서	식용에 적절하게 생산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허용한 수출가공업체
			검사성적서	무, 양파 미혼입
			제조사 증명서	마늘 구매계약서, 알마늘 사용 증명
14	모든 국가	LED완구와 캔디가 접촉하는 제품	국내 증명서	①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안전확인 신고확인증 ② 안전확인신고서 첨부서류 ③ 제품검사 결과서
15	ASF 발생국가[3]	돼지를 원재료로 제조한 식품등	정부 증명서	열처리 증명서 또는 ASF 검사성적서 또는 ASF FREE 증명서
16	중국, 대만, 베트남, 태국	PET 재질의 기구	제조사 증명서	재질 확인 증명서
17	천일염 수입 허용국[4]	벌크 형태 천일염	정부 증명서	식용 천일염 분류
18	모든 국가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제조사 증명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요건 충족자료
			검사성적서	최종 제품 기능성 성분 함량
19	중국	'룽커우 싼밍 수산식품 유한공사' 제조 오징어채	검사성적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제조국의 기준에 적합
20	네덜란드	ZEELANDIA H.J. DOELEMAN B.V.사 곡류가공품	정부 증명서 검사성적서 제조사 증명서	수입신고 제품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에틸렌옥사이드(EO)에 오염되지 않았음
21	프랑스	L'EPICURIE사 소스		
22	터키	CARGILL TARIM VE GIDA SAM. TIC. A.S사 혼합제제		
23	프랑스	SILL(LE RADEN 29860 PLOUVIEN, Est. 29.209.090)사 가공치즈		
24	프랑스	LOUIS FRANCOIS사 혼합제제		

연번	대상국가	대상제품	제출서류	증명내용
25	폴란드	BEL POLSKA SP. ZO.O.(UL. GRUNWALDZKA 97, 06-330 CHORZELE, Est.14221601)사 가공치즈	정부 증명서 검사성적서 제조사 증명서	수입신고 제품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에틸렌옥사이드(EO)에 오염되지 않았음
26	이탈리아	UNIGRA SRL사 식물성크림		
27	이탈리아	LATTE MONTAGNA ALTO ADIGE SOC. AGR. COOP(VIA FALZES 19 BRUNICO(BOLZANO), Est.CE IT 41 4)사 자연치즈		
28	호주	DURABLEND PTY LTD사 기타농산가공품		

1) BSE 발생국(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2) 생산지 증명서는 모든 지역이 제출대상이며, 다음의 13개 도·현은 생산지 증명서와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13개 도·현: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아가타, 시즈오카

3) ASF 발생국(58개국) :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독일

4) 천일염 수입허용국(24개국) :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태국,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영국

영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연번	대상제품	구비서류	증명내용
1	탈염해양심층수 원료 혼합음료	검사성적서	원수가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기준에 적합
2	아마씨 및 아마씨 함유제품	제조사 증명서	열처리를 거쳐 시안배당체 제거
3	프로폴리스추출물(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증명서	제조과정에서 왁스 제거 공정을 거쳐 제조
4	혼합제제(식품첨가물)	제조사 증명서	가스형태 제품의 개별 첨가물이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에 적합
5	식물유래 표시된 엠에스엠(MSM)	정부 증명서	엠에스엠 원재료 기원(식물명칭 포함) 확인
5		제조사 증명서	정부 증명서의 원재료를 제품에 사용
6	석창포 원료 가공식품	제조사 증명서	석창포를 물로 추출한 원료를 사용
7	유산균, 유산균 배양분말(정제가공용)	제조사 증명서	배양 등의 공정 후 제품에 사용(제품설명서) 및 통관 이후 배양 공정 후 사용(제조계획서)
8	식품공전에 학명이 정해진 농·임산물	제조사 증명서	학명 및 사용부위 확인
9	쑥 원료 식품등	제조사 증명서	학명 확인
10	스피루리나(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증명서	학명 확인
11	인디안 베이리프	제조사 증명서	학명 확인
12	조류(algae)	제조사 증명서	학명 확인
13	삼지구엽초, 생녹용 원료 가공식품	제조사 증명서	학명 확인 및 사용조건(생녹용) 확인
14	가는잎미선콩 원료 가공식품	제조사 증명서	학명 및 사용부위 확인
14		검사성적서	Phomopsins(기준: 5ppb 이하) 및 Lupin alkaloids(기준: 200ppm 이하)가 기준에 적합
15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함유 제품	제조사 증명서	학명 확인
16	코엔자임 Q10 함유 제품	제조사 증명서	코엔자임 Q10 제품에 사용된 원료(학명 포함) 확인
17	EPA 및 DHA 함유유지(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증명서	제조에 사용된 어종 확인
18	진흙버섯	정부 증명서	학명 확인
19	금속재질 분쇄기 분쇄공정 제품	제조사 증명서	분쇄 이후 자석을 통해 금속성이물 제거 공정 확인
20	삼씨 원료 식품등	제조사 증명서	씨앗의 껍질(포엽과 외종피)을 제거
21	남극크릴 원료 식품등	제조사 증명서	남극크릴의 머리와 껍질을 제거
22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제조사 증명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요건 충족자료
22		검사성적서	최종 제품 기능성 성분 함량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03

제품별 수입신고 요령

01 공통사항



1 수입신고 전 정밀검사 항목 및 검사지시의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를 통해 반기별(매년 1월, 7월) 중점검사항목 및 위해정보 등에 따른 검사지시 사항 확인 가능

2 정밀검사에 따른 수수료

- 검사에 따른 수수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과(민간검사기관은 별도 수수료 운영)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고객지원 → 검사수수료 안내'를 통해 품목별 모의 수수료 확인 가능
-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5] 수수료

4. 수입식품등의 검사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1) 별표 9 제2호다목4)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구매대행 수입식품등
2) 별표 9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3) 별표 9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수입 최소량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 후 수입 최소량 이상 수입신고
4) 별표 10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현장검사결과 지방식약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5) 별표 10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된 수입식품등

3 정밀검사에 따른 검체 수거량

- 구분별 수거량은 다음과 같으며,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의 수량 또는 중량이 수거량과 같거나 적은 경우 해당 수입신고서는 반려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 및 수거량

1. 수거대상 및 수거량

가. 식품

1) 가공식품 : 600 (g·mL)(다만, 캡슐류는 200 g)
2) 유탕처리식품 : 추가 1 kg
3) 자연산물
   가)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 1 ~ 3 kg
   나) 채소류 : 1 ~ 3 kg
   다) 과실류 : 3 ~ 5 kg
   라) 수산물 : 0.3 ~ 4 kg

나. 식품첨가물

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가) 고체 : 200 g
나) 액체 : 500 (g·mL)
다) 기체 : 1 kg
2) 비소·중금속 함유량 시험 : 50 (g·mL)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

라. 건강기능식품

1) 액상제품 : 600 (g·mL)
2) 정제·캡셀·분말·과립·환제품 : 200 (g·mL)
3) 그 밖의 건강기능식품 : 400 (g·mL)
4) 원료 또는 성분
   가) 자연산물 : 1 ㎏
   나) 성분 : 500 g

마. 축산물

1) 식육·포장육 : 500 g
2) 원유 : 500 mL
3) 식용란 : 20개
4) 식육가공품 : 500 (g·mL)
5) 유가공품 : 500 (g·mL)
6) 알가공품 : 200 (g·mL)

2. 수거방법

가.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으로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나. 2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라.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마. 수거대상 축산물이 수거량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수거할 수 있다.

바.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및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사. 식품조사처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0.2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다만,

소스류 및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조사처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이 혼합된 식품은 0.6 kg을 추가로 수거하고, 밤·생버섯·곡류 및 두류는 1 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아.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 및 미생물검사 등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자.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차.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이화학검사를 고려하여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은 6개를 수거할 수 있다.

카.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와 멸균처리된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 6개로 하되, 800 (g·mL)이상을 수거할 수 있다.



02 농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는 해당 농산물의 품목을 입력

- 품목은 각 농산물별 부위(뿌리, 잎 등) 및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고
- 적절한 품목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하여 신규로 생성요청

2 농산물의 농약 검사는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항목을 검사

- 최초로 수입되는 농산물의 경우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1항1호 및 [별표 3]에 따라 지정된 농약을 검사('21년 8월 기준 69종)

다이아지논, 디디티, 디코폴, 디클로르보스, 말라티온, 메토밀, 메톡시페노자이드, 메티다티온, 보스칼리드, 비에치시, 비펜트린, 사이퍼메트린, 사이프로디닐,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족시스트로빈, 아트라진, 에티온, 엔도설판, 이마잘릴, 이프로디온, 카바릴, 카보퓨란, 클로로탈로닐, 클로르피리포스, 클로르페나피르, 트리아디메폰, 트리아조포스, 트리플루뮤론, 티아메톡삼, 파클로부트라졸, 퍼메트린, 페니트로티온, 펜발러레이트, 펜토에이트, 펜프로파트린, 프로사이미돈, 프로클로라즈, 프로페노포스, 플루벤디아마이드, 피라클로스트로빈, 피리메타닐, 피리미포스메틸, 플루디옥소닐, 디메토에이트, 클로란트라닐리프롤, 클로로벤주론, 피프로닐, 루페뉴론, 테부코나졸, 이윤-디아이피엔, 클로르피리포스-메틸, 카벤다짐, 티아벤다졸, 클로티아니딘, 디페노코나졸, 피리다벤, 이미다클로프리드, 피페로닐부톡사이드, 톨펜피라드, 디플루벤주론, 델타메트린, 메티오카브, 뷰타클로르, 아이소프로카브, 플루트리아폴, 피리프록시펜, 디니코나졸, 트리아디메놀

- 무작위 검사에 해당하는 농산물의 경우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1항2호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7.1.2.2.에서 정하는 농약을 검사('21년 8월 기준 473종이나, 고시 개정에 따라 10.1. 선적분부터 511종 시행)
-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4]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준이 신설 또는 강화되는 경우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함(단, 최초 검사항목인 69종에 한함)

3 일본산 14개현 27개 품목 농산물은 수입금지

지역명	금지품목
후쿠시마현	엽채류, 결구엽채류, 순무, 죽순, 청나래고사리, 매실, 유자, 밤, 쌀, 버섯류, 키위, 고추냉이, 두릅, 오가피, 고비, 고사리, 대두, 팥, 땅두릅(독활)
지바현	엽채류, 엽경채류, 차, 버섯류, 죽순
도치기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두릅, 죽순, 밤, 청나래고사리,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군마현	시금치, 카키나, 차, 버섯류, 오가피, 두릅
이바라키현	시금치, 카키나, 파슬리, 차, 버섯류, 죽순, 오가피
미야기현	버섯류, 청나래고사리, 죽순, 고비, 오가피, 메밀, 대두, 쌀, 고사리
이와테현	버섯류, 오가피, 메밀, 대두, 고비, 고사리, 미나리, 죽순
나가노현	버섯류, 오가피
사이타마현	버섯류
야마나시현	버섯류
아오모리현	버섯류
시즈오카현	버섯류
가나가와현	차
니가타현	오가피(오갈피나무)

03 수산물 신고요령



1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서의 품목 또는 유형에는 해당 수산물의 품목을 입력

- 품목은 각 수산물별 보관조건(건조, 신선, 냉동 등), 처리형태(살, 필렛, 자숙 등)을 구분하고 있으므로, 해당하는 품목으로 선택하여 신고
- 적절한 품목이 없는 경우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지방청 수입식품검사소로 문의하여 신규로 생성요청

2 수산물에 대한 약정을 맺은 국가는 위생증명서를 수입신고서와 함께 제출

- **약정국 목록**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21.9.23. 시행)

3 수일본 8개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

-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8개현** :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지바현
- **일본 수산물 산지증명서 및 방사능 성적서 제출 8개현** : 홋카이도현, 도쿄도, 가나가와현, 아이치현, 미에현, 에히메현, 구마모토현, 가고시마현
- **일본 수산물 산지증명서 제출** : 위 16개현 이외 일본 수산물

04 축산물 신고요령



1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품목인지 확인 후 수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은 수입이 허용된 국가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해당 국가 및 품목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확인 가능

2 해외작업장의 등록여부를 확인 후 수입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축산물만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 신고 불가함

  * 해외작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해외작업장의 설치 운영자가 수출국 정부를 통하여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 등록된 작업장 목록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에서 조회가능

3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단위로 수입신고



05 가공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신고요령



1 동일 모선으로 동일 수입자가 수입한 동일 수입식품은 반드시 수입신고서 1건으로 신고

- 수송편명 또는 입항일자가 다른 경우 수입신고서 별도 작성
- 동일모선으로 수입된 동일 수입식품이나, 여러 화물관리번호, 제조일자(또는 유통기한) 또는 포장단위가 혼재된 경우,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작성 시 3쪽(UNI-PASS 수입신고서 중 '품목사항-품목정보')에 모든 화물관리번호 및 제조일자별 총수량, 순중량, 과세가격을 구분 기재

2 원재료 및 제조공정은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대로 신고

- 수입신고서에 작성된 원재료 및 제조공정은 서류검사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적합한 원재료 및 제조공정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원재료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고시되지 않은 원재료인 경우 수입할 수 없으므로, 수입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식품에 사용가능한 원료 목록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별표 3]에서 확인 가능하며, 식품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통해 사용가능한 식품첨가물 목록 및 사용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부적합 제품과 제조일자(없는 경우 유통기한)가 동일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은 부적합 처리

-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이면서 제조일자(없는 경우 유통기한)가 같은 제품을 다시 수입신고 하는 경우 부적합 처분됨
  * 관련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3.다.7)

◆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대상 식품여부 확인 및 구비서류 준비

- 「수입금지 중에 있는 식품등 고시」(식약처 고시 제2021-5호)에 따라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음

국가명	금지품목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 - 단, 아래 품목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이 가능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1) 우지가공품 2) 젤라틴, 콜라겐 3) 제2인산칼슘



06 기구 및 용기·포장 신고요령



1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질은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위의 재질을 신고

- 재질은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의 재질을 신고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제 및 금속제 등이 도장 · 도금된 경우 해당 재질코드로 신고
- '야자잎', '바나나잎' 등 자연산물의 경우 '천연재질'로 신고
- 신고하고자 하는 재질코드가 없는 경우 시스템 문의처로 문의(☎1811-6496)

2 동일한 재질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식품과 접촉하는 부위와 그 색상이 다른 경우에도 1건으로 수입신고 가능

- 제조국, 제조업소, 수입자, 재질 등이 동일하고 색상 또는 모델명이 다른 기구·용기·포장의 경우 대표적인 제품의 제품명을 1쪽에 기재하고, 각 바탕색상(무늬) 또는 제품명은 신고서 양식 3쪽의 항란에 기재(UNI-PASS 수입신고서 중 '품목사항-품목정보')
- 1건으로 신고하는 경우 한 가지 색상이라도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는 수리되지 않음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04

수입신고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

01 수입신고 및 검사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하는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 · 판매업 시설기준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식약처장이 정한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신규교육 4시간)하여야 합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http://www.kfia21.or.kr) 또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 http://edu.khsa.or.kr)에서 집합 또는 온라인 교육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통합민원상담 → 전자민원 → 전자민원 신청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별지 제25호 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 업체 및 대표자 → 사용자등록 → 본인 인증 및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 → 업체 정보 → 부호 및 서비스신청 → SMS 신청 → 승인요청) 후 '통관단일창구'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원재료 배합비율을 모두 기재해야 하나요?

주원료(수입신고 제품의 유형을 판단하기 위한 원재료)와 사용량(기준)을 정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반드시 배합비율을 밝혀 신고하여야 하나, 모든 원재료의 배합비율(100%)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 배합비율을 생략할 수 있는 원재료의 함량은 "0"으로 신고가 가능

다만, 기준·규격 적용 및 표시기준 등 검사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원재료의 배합비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 표시에 원재료 정보가 일부만 표시된 경우 신고방법은?

제품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 중 일부가 수출국의 표시 규정 등에 따라 현품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원재료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제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BSE(소해면상뇌증) 관련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BSE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서 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도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 제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BSE(소해면상뇌증) 발생국에서 비발생국의 우골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은 수입이 가능한가요?

BSE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서 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따라서, BSE 발생국가에서 '우골'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원료의 원산지가 BSE 비발생국가인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신고를 해야 하나요?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조사용 제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인정을 위해 식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용도는 '연구조사용'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제품에 대한 제조방법설명서, 연구·조사기간, 성분배합비율 등을 포함한 연구·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용도는?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용도는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신고하고, 제조가공업자는 국내 통관 후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실제 제조·가공하는 업소로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업허가(등록·신고)기관의 장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유통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통관 후 소분 ·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벌크포장 형태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통관하여 단순히 소분·포장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고 검사받아야 합니다.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접시는 수입신고하여야 하나요?

식품용이 아닌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품용 기구의 모든 재질을 신고하여야 하나요?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신고서 작성 시 재질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코드와 재질명칭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질명칭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된 명칭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의 최초 정밀검사 시 검체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2]에서는 수입식품등의 무상수거 대상과 수거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검사에 필요한 양'으로 정하고 있어 재질, 검체의 크기, 시험항목 등에 따라 필요한 검체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이 최초로 수입되면 어떤 항목을 검사하나요?

일반적으로 수입식품등이 최초로 수입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한 중점검사 항목을 적용합니다.

수입식품의 중점검사항목은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통관단계 검사지시('중점'으로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초 정밀검사 시 검사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최초 정밀검사 시에 검사기관은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 중에서 수입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비용은 해당 검사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에 희망하는 검사기관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우리 처 누리집(http://mfds.go.kr → 정책정보 → 시험검사기관 → 시험검사기관 지정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밀검사 비용은 검사항목별 검사비용이 발생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서 검사 수수료를 공개하고 있으며, 민간 식품전문시험·검사기관의 경우 기관별로 검사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니 해당 검사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고객지원 → 검사수수료안내'에서 정밀검사 시 예상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수입 가공식품의 [사례 1] 제품명이 변경되면, [사례 2] 원재료 일부가 변경되면 정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최초로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은 서류검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 1] 수입신고하는 제품명이 다른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으로 인정이 불가하여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례 2] 정밀검사를 받은 식품의 원재료명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정밀검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조건은 본 안내서 '1.3.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재검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식품위생법」 제2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한다)을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당초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이물, 미생물, 곰팡이독소, 잔류농약 및 잔류동물용의약품)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시 수입할 수 없나요?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유통 중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식품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 :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 선정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 :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

다만,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농·임·수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축산물 중 식육·원유·식용란 제외)과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및 제조일자(제조일자가 없는 경우 유통기한)가 모두 동일한 수입식품등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부적합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2 구비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 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 터목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서류도 '식품안전나라'에 함께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제품의 형태 및 제조국가 등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니 위 규정 및 '식품안전나라'의 게시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한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https://unipass.customs.go.kr)을 통한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와 함께 첨부파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 등 원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우편 등을 통해 해당 수입식품이 반입된 보세장치장을 관할하는 수입식품검사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별도의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으나, 증명내용 이외에 발행한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면제를 위한 구비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식품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와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을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분유통증명서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부 증명서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만 해당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 및 콜라겐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증명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협의된 콜라겐 및 젤라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 동물검역 →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 품목에서 '콜라겐' 또는 '젤라틴' 검색

BSE 발생 이력서 3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

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특정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

③ (콜라겐의 경우) 콜라겐의 제조 원료는 세척(washing), 산 또는 알칼리를 사용한 pH 조정(adjustment)과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 여과(filteration) 및 압출(extrusion)이 포함된 처리를 받았거나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가공방법으로 처리되었음

④ (젤라틴의 경우)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BSE(소해면상뇌증) 비발생 국가에서 반추동물을 원료로 제조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구비서류?

BSE 비발생국가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관련단체, 협회 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일본에서 생산 또는 제조하여 수입되는 모든 식품은 매 수입 시 생산지 증명서(13개 이외 지역) 또는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포함하는 정부 증명서(13개도·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 13개 도·현(수산물은 일부 상이) : 후쿠시마, 이바라키, 토치키, 군마, 사이타마, 치바, 미야기, 가나가와, 도쿄, 나가노, 야마가타, 니이가타, 시즈오카

생산지증명서는 제조일자별로 수량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방사능 검사성적서는 제조일자별로 각각 검사한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03 축산물 분야



축산물 수입 요건이 별도로 있나요?

축산물은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 따라 수입이 허용된 국가산 품목이어야 하고,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 및 품목은 '우리 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해외작업장 등록 여부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 검색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축산물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축산물을 수입신고 할 때는 수출국 정부가 식약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수출 위생증명서'는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제3조의2에 따라 원본(부본을 포함한다)이어야 합니다.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은 '우리 처 누리집(www.mfds.go.kr) → 정책정보 → 식품 정책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육가공품을 견본품으로 수입하고자 하는데 신고하여야 하나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 1. 다.에 따른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에 해당된다면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샘플을 수입하여 영업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무상으로 반입하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고, 해당 제품에 견본 또는 광고물품이라는 표시가 명확하여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 관세청에서 최종 인정하는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수입 축산물의 검역과 관련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축산물을 재분할하여 판매가 가능한가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 3) (11)에서 '포장축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분할 판매하지 말아야 하며, 표시대상 축산물인 경우 표시가 없는 것을 구입하거나 판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①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따라서, 포장축산물이 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분할 판매하여서는 안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최소판매단위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축산물이 여러 개의 선하증권(B/L NO)으로 수입되었을 때 신고방법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제7조에 따라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수입 당시의 선하증권(B/L NO)단위로 하되,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사 동일 수입 축산물' 기준은 동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식육·원유·식용란은 '생산국·품목·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이 같은 것'으로,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해외작업장(제조·가공장)·제품명·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04 수산물 분야



수산물원료 가공과정에서 [사례 1] 소금을 첨가한 경우, [사례 2] 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수산물인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1. 총칙 → 3. 용어풀이 → 42)에 따른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합니다.

[사례1]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 원료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 13-6. 식염에 해당하는 천일염 및 기타소금을 사용하여 단순 혼합한 경우 단순 수산물로 수입가능하나,
* 혼합 비율 표기 필요

[사례2]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 원료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하고 있는 사용 기준을 준수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경우 가공식품으로 수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품종은 같으나 유형(처리형태)이 다른 경우 기 등록된 품종코드 사용 가능한가요?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이 기존에 등록된 품종 및 형태와 동일한 경우 기 등록된 품종코드 사용이 가능하나, 품종은 동일하나 처리형태가 다른 경우 품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 등록된 품종코드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통계정보 → 통계 → 일반통계)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수입수산물의 신규품종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지방식약청(또는 수입식품검사소)이 현품의 한국명, 영명, 학명, HSK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규품종코드의 신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당 품종코드를 신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후 지방청장이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별지 제6호 서식]의 수입수산물 신규품종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면 신규품종코드가 신설됩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성 수산물 원료 조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별표1]“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명시되어있거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World Register of Marine Species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고, 식용 근거, 학명·이명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위생약정국의 경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만 수입 가능한가요?

수입하고자 하는 수산물의 수출국이 위생약정을 체결한 8개 국가(러시아,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위생약정 고시에 따라 수출국의 검사기관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서 제조·가공·포장된 수산물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통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d.mfds.go.kr →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업체조회(제조/작업장/수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수출국 정부기관 소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가능한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현재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로 관리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

① 냉동식용어류머리[대구(Gadus morhua, Gadus ogac, Gadus macrocephalus), 은민대구(Merluccius australis), 다랑어류 및 이빨고기(Dissostichus eleginoides, Dissostichus mawsoni)에 한함]
② 냉동식용어류머리 가식부[모든 어종(복어류 제외)]
③ 냉동식용어류내장[모든 어종의 간과 알(복어 간과 알 제외), 창난, 이리(곤이)에 한함]
④ 냉동식용연체류내장[오징어 난포선에 한함]

제품이 특별위생관리식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산부산물인 경우에도 수입 가능한가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특별위생관리식품의 수입위생요건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냉동식용어류머리 및 냉동식용어류내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고, 수산물로 분류되더라도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상 어류의 웨이스트로 분류(수산물 육질부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내장(어류의 간과 알 제외), 꼬리 등)되므로 식용으로 수입 불가하여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 시에 반려됩니다.



특별위생관리식품(수산부산물) 수입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특별위생관리식품"은 수출국에서는 식용으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므로 수입허용국가 및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발급한 수출 위생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가 수입허용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위생관리식품별로 수출국의 위생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수입위생평가를 실시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위생평가 절차 : 수출국 정부 수입허용 요청 → 설문서 송부 → 답변서 검토 → 수출국 위생관리실태 현지조사 → 수입허용여부 결정 → 수입위생요건 고시 개정 및 수출위생증명서식 협의 →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수산물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수입신고 대상 수입식품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와 관련 서류(한글표시사항, 위생증명서 등)를 수입되는 식품의 통관장소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수입신고서, 한글표시사항

② 약정국 및 특별위생관리식품
-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③ 일본산 수산물
- 생산지증명서, 방사능 검사증명서

④ 외화획득용 및 자사제조용 등
- 수출계획서, 영업허가등 인허가서류 사본,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일본산 수산물 수입 시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가 있나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원산지) 수산물(생산, 제조, 가공한 수산물 및 단순가공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정부 증명서(생산지 및 방사능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8개 도·현**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증명서 원본 및 생산지증명서가 요구되며, 이외 나머지 도·현에 대해서는 생산지증명서가 요구됩니다.

* 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

** 가나가와, 도쿄도, 홋카이도, 에히메, 구마모토, 미에, 가고시마, 아이치

조건부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대상에 해당하나요?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제31조1항에서 규정하는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또는 [별표9]제2호라목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검사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입수산물 검사에 관한 규정」 제19조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산물의 경우 조건부 수입신고 확인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별표9] 2.다.1)에 따라 현장검사결과 식품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②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동해·발해·황해 및 동중국해 이외의 해역에서 어획되었다고 의심되는 복어
③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 제 31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별표3] 제 2호 및 제 4호에 해당하는 수산물
④ 활어, 냉동품, 건제품

수입수산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의 검사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수입 수산물 검사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하고 있으며, 정밀 및 표본검사 시 중금속(총수은, 메틸수은, 납, 카드뮴), 방사능(세슘, 요오드), 패류독소(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미생물(세균수, 대장균 등), 복어독, 동물용의약품, 일산화탄소, 히스타민, 벤조피렌 이외에도, 국내·외 위해정보 발생 시 해당항목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입냉동수산물의 내용량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얼음막 코팅은 냉동수산물의 건조 및 유소현상을 방지하여 제품을 보존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내용량을 증량시키기 위해 과도한 얼음막 코팅을 하거나 인위적으로 물주입 하는 등의 악용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내용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량 검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7.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여 [제8.일반시험법 → 1.3 식품 중의 내용량 시험법 → 다.7)냉동수산물의 내용량]을 따르고 있습니다. 얼음막을 내용량의 20퍼센트를 초과하도록 생성시킨 경우, 내용량의 부족량이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지만 인위적으로 물주입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되어 수입 및 통관되지 않습니다.



05 표시사항



수입식품에 수입자의 상표를 표시할 수 있나요?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에 따르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OEM) 식품등의 위탁자 이외의 상표나 로고 등을 사용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위탁생산 식품등 아닌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의 상표 표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입식품에 수출국 제조업소 명칭이 외국어(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경우,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에 제조업소 명칭을 표시해야 하나요?

한글표시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의 경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소의 영업소명과 해당 수입식품의 제조업소명을 한글 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입식품 자체에 외국어로 제조업소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한글 표시사항 스티커에는 제조업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의 영양표시는 현품 수출국 표시 그대로 한글표시사항에 표시하여야 하나요?

수입식품에 수출국에서 표시한 영양성분은 표시기준, 시험법 등이 국내와 다를 수 있어 수입식품 현품에 수출국 언어로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국내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된 함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식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기준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영양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하나요?

한글표시사항은 소비자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조사 목적으로 국내 수입되는 식품의 경우에는 한글표시사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 주류 현품에 제조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표시사항에 "제조번호 : 현품 별도 표기"로 표시가 가능한가요?

수입 주류 제품의 현품에 제조번호 또는 병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가 포장재의 훼손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한글표시사항에는 제조번호나 병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표시위치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현품 별도 표기"보다는 규정에 따라 표시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입되는 식품의 제조일자가 "연월" 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월" 의 1일로 표시가 가능한가요?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한이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에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연월일의 "일"의 표시를 해당 "월"의 가장 빠른 날인 1일로 표시하는 경우 안전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수입식품의 제조연월일이 "연월" 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월"의 1일을 제조연월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식품등에 “무보존료”, “보존료 무첨가”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사용기준에 따라 해당 식품등에 보존료(13종)*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최종 제품에 검출되지 않은 경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보존료(13종)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식품등에 대해서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 1) 보존료를 사용할 수 있는 ‘소스’는 무보존료 표시 가능
예시 2) 보존료(13종)를 사용할 수 없는 ‘면류’에 무보존료 표시는 불가
* 데히드로초산나트륨, 소브산 및 그 염류(칼륨, 칼슘), 안식향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륨, 칼슘), 파라옥시안식향산류(메틸, 에틸),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나트륨, 칼슘)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부록

01 영업자 준수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1. 공통사항

가. 영업등록증은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관계 공무원등의 출입·검사·수거 등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17조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판매일·판매처·판매량·수입일·선하증권번호(수입쇠고기의 경우 이력번호로 한다)·제조국·수출국·제조회사명·수출회사명을 기록한 거래내역서 및 내용명세서를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수입일부터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식품등의 거래내역서는 유통기한 종료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기록·보관한 것으로 본다.

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발급한 수입신고확인증과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수입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 장난감 등이 함께 포장되어 있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장난감 등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해야 하며, 해당 장난감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장난감 등이 수입식품등의 보관·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포장·용기가 파손된 수입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수입식품등의 부패·변질·폐기·유통기한 경과 등의 책임이 있는 경우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

아.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였거나 지정한 것으로 보는 국내외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 중 어느 하나를 그 제품의 수입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수입신고 시 원본을 제출하였을 경우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보관한다).

자. 수입식품등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정보를 입수하였거나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위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차.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 식품 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사진은 제외)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카.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수입된 수입식품등이 안전성·기능성(기능성은 건강기능식품만 해당한다)의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불량한 때에는 당해 제품을 스스로 회수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파. 자신이 유통·판매하는 수입식품등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운반차량은 수시로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야 하는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 서류(인정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기능성 표시·광고 사전심의필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거.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 사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너.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의심되는 위해사실(이상사례를 포함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더. 삭제 〈2019. 4. 25.〉

러. 삭제 〈2019. 4. 25.〉

머. 삭제 〈2019. 4. 25.〉

버. 축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전환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냉장제품 및 냉동전환 제품의 유통기한을 말한다), 냉동으로 전환하는 시설의 소재지, 냉동전환을 실시하는 날짜와 냉동전환이 완료되는 날짜 및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번호를 신고(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냉동전환 대상 축산물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시

2) 냉동전환 신고 사항 변경 시 해당 변경내역을 지체 없이 신고

3)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냉동전환을 실시하여야 하며, 냉동전환 완료일이 냉장제품의 유통기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서. 삭제 〈2019. 11. 18.〉

어.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터. 수입식품등의 원료, 제조공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증명서류를 해당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이 2년 이상 남은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류를 수입식품등의 유통기한 종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퍼. 제3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수입식품등의 경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다른 식품 등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허.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으로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은 「약사법」 제2조제5호의 한약으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3. 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자 및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수입자·수입일·반입장소·수량·중량·선하증권번호·제조국·수출국·수출회사명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관계 공무원등에게 다른 영업자의 수입신고서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검사하는 검사기관에 수입식품등의 신고업무와

관련된 검사를 의뢰할 때 검사수수료 외의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여 법 제20조제2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삭제 〈2019. 4. 25.〉

4.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준수사항

가. 수입식품등의 제품명·수입자·수입일·수량·중량·선하증권번호·반입일·반출일을 기록하고 이를 수입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나. 수입식품등의 확인 및 구별이 가능하도록 화물관리정보의 표시를 수입식품등에 부착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입식품등은 공산품과 별도의 공간에 분리하거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 또는 구획보관이 어려울 경우 랩으로 감싸거나 별도 포장하여 다른 공산품 및 분진 등과 교차오염 우려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 위험물 등과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은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거나 명확하게 식별되는 표시를 하여 일반물품과 구별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마. 바닥, 벽면 및 천장과 적정한 거리를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바. 보관온도가 정하여진 수입식품등은 보관온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사. 관계 공무원등이 출입·검사·수거하는 때에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아. 수입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하나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 수입된 수입식품등을 2 이상의 장소에 분리하여 보관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화물관리정보 표시란에 분리하여 보관할 제품의 보관장소 및 수량을 각각 적어야 한다.

02 수입식품 검사부서 및 관할구역



1 본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과명	위치	업무범위
수입식품정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 수입식품등 안전관리 법령 및 고시의 제·개정 • 수입식품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명령 및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 수입식품등의 영업등록 관련 업무의 총괄
현지실사과		• 식품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는 국가에 있는 제조업소 현지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축산물 수입 관련 위생 및 안전 실태조사 • 수산물 수입 위험평가 총괄 및 조정 • 해외우수제조업소, 우수수입업소,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등록·관리
수입검사관리과		•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계획 수립 및 조정관리 • 위해정보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 검사항목 지정 등 검사업무의 조정·관리 • 수입식품영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 운영
수입유통안전과		• 수입식품등 유통관리 계획 수립·운영 • 유통이력추적관리 대상 수입식품등 선정 • 수입식품등 수거 및 검사계획 수립·관리 • 수입식품등의 단속계획 수립, 회수관리, 이물조사, 행정제재 등 총괄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		•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	검사부서	위치	관할 구역
서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관리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특별시, 경기도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가평군 및 연천군(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강릉 수입식품검사소	강원도 강릉시 공제로 357 강릉영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층	강원도
부산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관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부산종합청사 4층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자성대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14	자성대 부두
	신선대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 터미널 1층	신선대 부두
	양산 수입식품검사소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산사옥 5층	양산
	신항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항로 96-87 부산신항만공사 신항사업소 2층	가덕도 신항만·창원·김해
	통영 수입식품검사소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 해양과학대학 6호관 1층	통영·거제·사천·진주·합천·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
	감천항 수입식품검사소	부산광역시 서구 원양로 35 암남동국제수산물도매시장 회관동 1층 1103호	감천항
경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수입관리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4동 7층	인천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시·남양주시·파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 가평군 및 연천군은 제외한다) (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지방청	검사부서	위치	관할 구역
경인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의왕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의왕시 오봉로 175	안양·의왕·성남·안산·시흥·군포·과천·광명
	광주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광주시 회안대로 900 로얄플라자 4층	광주·여주·이천·양평·하남
	인천국제공항 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411호	인천국제공항
	평택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마린센터 11층	평택·오산·화성·안성(일죽면, 죽산면 제외)·용인(남사면 한정)
	인천항 수입식품검사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테크노파크 미추홀타워 9층	인천광역시(인천항, 인천신항)
	용인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보라1로 10번길 6-10 휘성빌딩 401호	용인(남사면 제외)·수원·안성(일죽면, 죽산면 한정)
	김포 수입식품검사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 36 경인항 김포터미널 111호	김포·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검사소를 제외한 구역)
	광양 수입식품검사소	전남 광양시 항만8로 18-42 광양항자유무역관리원 2층	광양·순천·여수·고흥·곡성·구례·보성·화순, 전라북도 남원
	군산 수입식품검사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두드림센터 1층 102호	전라북도(남원 제외), 충청남도 서천
대전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	천안 수입식품검사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4층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서천 제외)

www.mfds.go.kr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청렴 韓 세상
Korea, a country of integrity

【 공직자 부패·공익 신고안내 】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부패·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민신문고 〉 부패·공익 신고" 코너

식품의약품안전처